

신용장거래관습 최적편성방안의 모색 : UCP 600 제14조 (b)항의 재해석*

김 기 선**

-
- I. 서 론
 - II. 합리적 서류검토기간 활용과 서류치유원리적용
 - III. UCP600 제14조(b)항의 후생분석
 - IV. 결 론
-

주제어 : UCP600 제14조(b)항, 합리적기간, 후생효과

I. 서 론

2007년 7월 1일, ICC를 중심으로 한 신용장 학계는 지난 13년간 지대한 역할을 해왔던 제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을 과감히 개정, 그간 축적된 신용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7-B00343)

** 군산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장 거래의 경험 속에서 신용장 시장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을 발효시켰다. 새로운 신용장거래의 해석기준으로써 그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제 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UCP 600이라 칭함)”은 신용장거래가 기술적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신용장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대립이나 마찰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용장통일규칙이 개정을 거듭할수록 과거보다 더욱 더 정교하고 치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건수는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는역설적인 현실은 신용장 거래관습의 안정성과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UCP600의 신뢰성 확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¹⁾

그간 신용장통일규칙이 ‘당사자간의 이해의 균형’이라는 명분에 묶여 사실의 문제(question of fact)²⁾로만 치부함으로써 규칙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아두어 신용장거래의 불확실성을 노정하였던 가장 핵심적 부문은 서류의 일치성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간과 합리적 주의의 영역이었다.

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성 여부는 당사자들의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일치성에 대한 주의수준이 관련 당사자간에 희망적으로 합치되지 않는 한 이들간의 마찰요인을 종식시키기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같은 서류일치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보완기재의 역할을 하는 신용장거래관습 특유의 운용기준이 신용장거래관습에 존재하는 바, 그것이 바로 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서류치유원리(doctrine of documentary cure)의 적용이다.³⁾ 서류치유원리는 신용장거래관습에 있어 가장 첨예한 영역

1) 신용장 제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1920년부터 1975년까지 300건도 채 미치지 못하였던 신용장 관련 소송건수는 1975년부터 UCP 500이 발효되었던 즈음의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1400여건을 넘고 있었고, 이중 서류의 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350여건에 이르렀다(*Documentary Credit Insight*, “Expert Commentary by Boris Kozolchyk, ICC Pub. S.A., Winter, 1997, p.5). 그리고 UCP 600의 개정이 이루어진 최근까지도 약 70%에 달하는 수익자 제출의 서류들이 서류의 1차 제시에서 은행으로부터 수리 거절되었다는 통계가 보고되었다(UCP, 6th Revision, Introduction, 2007)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enry Harfield, " An Agnostic View," *Brooklyn Law Review*, Vol. 56, No.1, 1990, pp.1-11 참조

3) 서류치유원리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내용에 문면상 엄격일치기준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수익자에 대한 대금지급이라는 신용장거래에서의 합리적 기대를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수익자로 하여금 당해 서류의 하자사항을 보완, 신용장의 유효기일가

인 합리적 주의수준의 조율 및 합치를 위해 은행 측면의 서류검토기간과 수익자 측면의 하자서류 보완기간의 연계성을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컨대 수익자가 치유기간의 확보 없이 유효기일 당일에 서류를 제시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하자가 유효기일 도래 전에 치유가 불가능할 만큼 그 하자의 양이 많을 경우라면 은행의 서류치유원리 적용을 위한 서류검토기간의 단축유인은 존재하는가?

나아가, 신용장통일규칙이 은행에게 부여하고 있는 합리적 서류검토기간의 최대치는 은행에게 보장된 기회집합(opportunity set)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설은행이 하자면제교섭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해 은행에게 주어진 서류검토기간을 완전히 활용한다 해도 이는 은행 고유의 부존권역(endowment)이 되는가?

끝으로, 수익자가 유효기일전 적절한 치유기간을 두고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주어진 서류검토기간은 고유의 부존권역이라기보다는 이를 단축해야 할 강한 유인이 작용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기존의 UCP 500은 명시적 조항의 형태로 ‘합리적 서류검토기간 7일’을 은행의 권리영역으로 부여했지만 실제 그 해석적용에서는 당초의 제정 목적과는 달리 은행의 행위수준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지 못함으로 인해 신용장거래질서의 교란을 초래해왔다.

개정을 거듭하며 70여년이 지나는 동안, 수익자와 은행간의 ‘이해의 균형’을 유지하기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류검토기간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치유원리의 해석적용이 소위 사실의 문제로 귀착됨으로 인해 신용장거래질서에서 더 이상의 기술적 효율을 보장할 수 없었던 신용장통일규칙의 이같은 구조적 모순은 드디어 UCP 600에 이르러 획기적인 조항의 마련으로 새로운 신용장거래관습의 모습을 갖추게 된 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UCP 600 제 14조 (b)항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본 조항의 개정 의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실무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지 제제시도록 하는 은행의 순수한 목적으로서의 상업적 배려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이는 곧 ‘가치상대적 공정성’이라는 신용장거래관습의 본질적 원리를 반영한 운용원리를 말한다 ; Gerald T. McLaughlin, "Letter of Credit :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cumentary Compliance," *Fordam Law Review*, Vol. 50, 1982, pp.887-894 참조 .

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이다. 최근의 UCP 600의 연구동향은 그것이 개정 초기의 상황인 탓도 있지만 본 조항의 심층적 연구는 뒤로한 채 지나치게 전체 조항에 걸쳐 포괄적 해석에만 치우쳐 있다는 것 또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UCP 600에 관한 국내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 형태이다. 하나는 신용장 거래에서 제출되는 제반 서류들의 요건을 중심으로 한 운용기준들, 다른 하나는 신용장 거래에 참여하는 실질적 권리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틀로써, 전자는 후자의 구조적 틀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만들어진 세부적 운용기준들이다. UCP 600을 준용하는 연구들은 대부분이 두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⁴⁾ UCP 600의 전반적 조항의 해석에 관한 연구들으로써는 강원진(2006, 2007), 김종철(2006), 박석재(2007, 2010), 서백현(2006), 서정두(2007, 2010), 박세운(2006, 2009), 이제현/김연숙(2007), 오원석/서경(2009), 이용근/최유섭(2006), 최석범(2006), 한재필(2006, 2007)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4) 강원진,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의 검토”,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p.3-20 ; 김종철, “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p. 21-44 ; 한재필, “UCP 600을 위한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p.45-65 ; 한재필, “ISP98하의 보증신용장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UCP 600과의 비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0. 9. pp.155-197 ;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pp.63-88 ; 박석재, “UCP 600에서의 통지은행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8. pp.107-127 ; 박세운, “UCP600에서의 복합운송서류 수리요건과 실무상 유의점”, 「국제상학」, 제24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9. 12. pp.229-248 ; 박세운·김영락·방두완, “서류심사에 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pp.103-121 ; 서백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항구간 운송 선하증권조항의 해석”,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2006 ; 서정두,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pp.91-118 ; 서정두, “UCP600 이후 선화증권 하자관련 분쟁사례”, 「무역상무연구」, 제4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2. pp.111-136 ; 오원석, 서경, “UCP 600의 서류심사기준의 기본원칙과 운송서류관련조항의 변경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8. pp.117-142 ; 이제현, 김연숙, “UCP600 운송서류조항의 개정내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6. pp.167-187 ; 이용근, 최유섭, “UCP600상의 서류심사관행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pp.85-101 ; 최석범, “UCP 600에서 서류관련규정상의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2006 동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pp.37-60 등.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 연구는 그것이 개정 초기 단계에 있어서인지 유력한 학술지보다는 오히려 신용장 정보지의 역할을 하는 Documentary Credit Insight에 기고문 형태의 글들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⁵⁾ 국외 연구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The Business Lawyer(2006, 2007)와 Annual Survey Report(2006, 2007) 등의 연구물은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발간의 Byrne 교수의 논평서⁶⁾ 및 ICC의 제반 유권해석집들은 UCP 600의 전부를 조망하는 연구서로서의 활용에는 시사점이 크지만 정작 UCP 600의 심층적 연구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여러 연구결과의 여건을 놓고볼 때 이미 UCP 600이 2007년 7월 1일 공포되어 실무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석적용에 있어 가장 큰 내재적인 난맥구조를 노정하고 있는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의 해석에 대한 중층적 분석이 국내외적으로 전무하여 연구공백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⁷⁾

본 영역과 관련하여 그 분석과 해결방안의 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규정이 어떠한 맥락구조에서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운용상에 있어 어떠한 실무적·법률적 유인효과를 창출해 주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실질적 권리 당사자들의 효용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조정해 줌으로써 얼마만큼의 후생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해법이 UCP 600상의 문언적 해석만으로는 쉽게 확인 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같은 경향은 종래의 특정 분야 일변도의 연구방법만을 가지고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을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신용장 분야

5) N. D. George, "Delete Reasonable time and without notice from the UCP", *DCI*, Vol.11, No.3. ICC Publishing S.A. 2005 ; J. F. Dolan, "Another view of notice without delay, disposal, and preclusion", *DCI*, Vol.11, No.2. ICC Publishing S.A. 2005 ; P. Taneja, "UCP 600: A document restoring the credibility od L/Cs", *DCI*, Vol.12, No.4. ICC Publishing S.A. 2006 ja, 2006

6) James E. Byrne , *The Comparison of UCP 600 & UCP 500*, IIBLP, 2007

7)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에 대한 연구들도 ICC의 유권해석과 함께 그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주된 내용은 합리적 서류검토기간의 설정과 서류검토기간 7일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의 탄력적 운용기준에 관한 내용들이었으며(ICC Opinions 각권 ; ICC ISBP, 2002 ; Ellinger, 1985 ; Schmitthoff, 1987), 이들의 공통적 결론은 당해 검토기간은 사실의 문제로서 이의 궁극적 판단은 각 사안별로 그 특성, 목적, 그리고 당시의 정형적 요건들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UCP 500에서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로 '7일'을 확정된 전후에도 각국 법원에 서류검토기간과 관련한 분쟁이 늘었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의 연구에 있어서도 판례 위주 또는 신용장통일규칙 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방법에 추가하여 상호보완적 차원에서 학제적 연구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⁸⁾

따라서 본 연구는 UCP 600 제 14조 (b)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류검토기간과 서류치유원리라는 신용장 특유의 체계적인 거래 메커니즘이 유의미한 결과를 창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해석기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적용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를 보이고, 나아가 이같은 은행과 수익자간의 이해의 균형과 편익공유의 맥락구조 속에는 은행 및 수익자로 하여금 보다 더 효율적인 행위의 선택을 유도하는 파생효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면밀한 분석 작업을 통해 제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세부목표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신용장 거래질서가 최적 편성될 수 있도록 그 해석적용방안의 객관적 틀을 제안하고 추후의 후속연구에 수궁 가능한 시사점을 주는데 그 궁극적 목적을 둔다.

II. 합리적 서류검토기간활용과 서류치유원리적용

1. 부존적 권역 기준과 내재적 합리성 기준

70여년간 신용장통일규칙상의 은행서류검토기간 활용의 합리성 개념이 그 제정 의도와는 달리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까닭은 그것이 서류치유원리 적용을 통해 수익자와의 가치상대적 공정성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기간 적용이나 활용이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UCP 600 제 14조 (b)항과 관련한 해석적용기준은 크게 다음의 두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비록 제 7 은행영업일에서 제 5 은행영업일로 이틀간의 서류검토기간의 단축은 있었으나 당해 서류검토기간이 은행 고유의 권리부존영역으로 확정됨으로써 당해 기간의 단축 유인은 더 이상 존재하

8)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Marvin A. Chirelstein, *Concepts and Case Analysis in the Law Of Contract*, Yhe Foundation Press, Inc., 1990, Chapter 1; Pieter ver Lauren van Themat,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rtinus Nijhoff, Hague, 1981, p.5 ; Mark Kuperberg & Charles Beitz, *Law, Economics and Philosophy*, Bowman & Allenheld, New Jersey, 1983, pp.3-12 참조

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서류검토기간과 수익자의 서류치유기간과의 이해의 충돌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당사자들 서로가 스스로 자신의 선택의지에 따라 행위수준을 결정해야만 하는 자율적 대처 영역이라는 견해이다 (이하 ‘부존권역기준’이라 칭함).

다른 하나는, 비록 6차 개정에서는 자취를 감춘 듯이 보이지만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 요건은 여전히 묵시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는 견해이다. 즉 ‘Reasonable Time’이라는 용어는 그간의 해석적용상의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삭제되었지만 ‘Maximum Period’라는 보다 명확한 용어로 단지 대체된 것뿐이어서 여전히 당해 서류검토기간의 단축요인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하 ‘내재적 합리성 기준’이라 칭함).

이 같은 해석의 양분으로 인한 모호성은 당해 조항의 문구가 주는 일견 모순적 맥락구조에 기인한다.

UCP 600 제 14조 (b)항에 따르면,

“개설은행의 지정에 의해 행동하는 지정은행, (있는 경우)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가 제시된 날 익일로부터 최대 제 5 은행영업일을 갖는다. 당해 기간은 유효기일 또는 서류제시를 위한 최종일의 당일 도래 또는 그 기간 이후의 경과가 초래되는 경우라도 단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영향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후반부만을 판단해본다면 금번 UCP 600은 부존권역기준에 의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은행이 실제 서류를 검토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관여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본 조항의 전반부에 명시된 최대치(maximum)의 개념은 그것이 고정된(fixed) 기간인지 아니면 내재된 합리성을 대변해주는 탄력적(flexible) 기간인지 그 판단이 불명확하다는 차원에서 당해 조항 해석적용의 모호성이 발단된다.

기존의 UCP 500 뿐만 아니라 최초의 UCP(1934)로부터 지금까지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시하였던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의 개념은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어 이 기간중의 고의적 지연은 정당화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특정한 기간만큼의 서류치유기간을 확보, 서류의 하자를 보완한 후 이를 재차 은행에게 제시한 경우 이미 정해진 유효기일이 경과해버리게 된다면 이는 유효기일 경과 후 서류제시(late presentation)로 간주되어 수익자의 하자서

류 치유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⁹⁾

USCIB의 공식 의견서(1996)¹⁰⁾에 따르면 은행의 서류검토 취급절차는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된 당시의 은행의 관련업무 정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지연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게 주어진 서류검토기간은 검토 결과의 의사결정 통보가 지체없이 서류검토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당해 은행에게 부당한 지연이 있었다고 책임 지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순수한 상업적 목적 하의 배려행위라 볼 수 있는 서류치유원리는 수익자에게 서류상의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가치 상대적 공정성을 상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은행이 자신이 준수하는 국제표준은행관행에서 이탈해서까지 황급히 서둘러 서류를 검토완료 하는 것을 종용하거나 강제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UCP 600 제 14조 (b)항을 해석함에 있어 소위 '내재된 합리성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ICC 국내위원회 UCP 600 공식 해설서(2007)도 이같이 해석하고 있다.¹¹⁾

그러나 실질적으로 볼 때 이미 서류검토기간에 있어서의 합리성 요건은 개정작업부의 결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본 조항에서 완전히 삭제된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상 서류검토기간 5일에 여전히 합리성 기준이 지배하고 있다는 논리는 일견 UCP 600의 개정의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난맥상에 대해 IIBPL발간의 UCP 600 논평서(2007)¹²⁾에서 Byrne은 당해 조항은 '은행의 서류검토행위에 대해 통일적 해석을 해치는 유인'이라고 혹평하고 나서고 있다. 이는 그간 신용장거래관습의 대표적 행위 공준이었던 합리성 기준이 UCP 600에 이르러 당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폐기됨으로 인해 오히려 더 심각한 해석상의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9) ICC의 유권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ICC, *Opinions(1989-1991) of the Banking Commission on queries relating to UCP*, ICC Pub. S.A., 1992, pp.21-22

10) *Letter of Credit Update*, Vol.12, No.10, Oct. 1996, pp.36-39

11) UCP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 「대한상공회의소」, ICC Korea, 2007, p.36

12) James E. Byrne, op., cit., pp.125-139

2. 연구모형의 구축과 조작적 정의

이하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이 숙원과제로 피하여 왔던 은행의 합리적 서류 검토행위수준이 UCP 600 14조(b)항의 개정결과 어떠한 형태의 변화된 양태를 보이게 될 것인지 평가분석하기 위해 선택행위결정이론을 도입, 이를 모형화 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류검토기간 5일을 은행의 부존 권역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내재된 합리성기준에 의해 해석하는 경우 이 두가지 해석기준이 은행과 수익자의 행위수준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이를 비교분석한다. 나아가 단지 이 두 기준간의 선택의 문제를 벗어나 어떠한 해석 기준을 마련해야만 이들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동시에 전체 신용 장거래관습의 후생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지 확증해보이도록 한다.

우선 종전의 UCP500 적용 하에서 신용장거래에 임했던 은행과 수익자 집 단을 크게 다음과 같이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표-1〉 은행과 수익자의 유형별 분류

당사자별 구별	은 행		수 익 자
A군	UCP500의 적용 하에서 유효기일 을 중심으로 충분한 만큼 서류치 유기간을 두고 서류를 제출한 수 익자에 대해 서류검토기간 7일을 자신에게 주어진 부존권역이라 간 주하지 아니하고 서류검토기간의 단축을 통해 수익자에게 서류치유 원리를 적용해 주었던 은행	C군	UCP500의 적용 하에서 은행 에게 주어진 서류검토기간 7일 을 은행의 권리영역이라 간주 하고 7일 이상의 충분한 서류 치유기간을 상정하고 은행에게 서류를 제출했던 수익자
B군	UCP500의 적용 하에서 유효기일 을 중심으로 유효기일 당일제시 또는 충분하지 못한 서류치유기간 을 두고 서류를 제출한 수익자에 대해 서류검토기간 7일을 자신에 게 주어진 부존권역이라 간주하고 7일 간의 기간을 완전히 활용하였 던 은행	D군	UCP500의 적용 하에서 은행 에게 주어진 서류검토기간 7일 은 은행의 부존 권역이 아니라 단축될 유인이 내재되어 있다 고 간주하고 상당히 짧은 서류 치유기간을 상정함으로써 은행 으로 하여금 촉박한 서류검토 행위를 촉구하였던 수익자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A-C]간의 거래와 [B-C]간의 거래는 서류검토 절차를 둘러싸고 마찰요인이 있을 수 없는 반면 [A-D]간의 거래는 서류검토 기간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B-D]간의 거래는 권리충돌에 따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래라 할 수 있다. 이는 합리적 서류검토기간의 결정 문제는 서류치유원리의 적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기한다. 즉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중심으로 당해 시간적 제약내에서 은행 측면의 서류검토의 완료와 수익자 측면의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은행-수익자 간의 실무적 행위 실현과정이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 개념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유의미한 서류치유원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류검토행위를 필수 전제조건으로 수익자에게는 충분한 서류치유기간의 확보가, 은행에게는 합목적적인 서류검토기간의 활용이 상호간에 합치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과 수익자의 이해의 균형을 깨지게 되고, 이는 곧 분쟁으로 연결된다. 상술한 거래 관계 중 [A-D]와 [B-D], 특히 [B-D]간의 거래상황과 관련한 판례가 신용장 상사분쟁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에 대한 방증이라 하겠다.¹³⁾

결국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과연 은행이 수익자에게 서류의 치유기회를 충실히 부여했는지의 검증을 수반하게 되며, 반대 의미로 수익자 역시 은행의 서류 검토 후 서류의 보완, 수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만큼 충분한 치유기간을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서류검토기간 합리성 판단의 핵심이 된다. 이는 곧 은행의 합리적 서류검토기간 활용행위는 상대방인 수익자 측면에서는 합리적 서류치유적용행위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Integrated Measurement System Inc. vs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1991) ; *Banque de L'Union Haitien, S.A. vs Manufacturers Hanover International Banking Corp.*(1991) ; *Crocker Commercial Services vs Countryside Bank*(1991) ; *Bank of Cochin vs Manufactures Hanover Trust Co.*(1986) ; *Alaska Textile Co. vs Chase Manhattan Bank*(1992) ; *Celotex Corp vs Catrett*((1992) ; *Leaseamerica Corp. vs Northwest Bank Duluth, N.A.*(1991) ; *Toyota Tsusho Corp. vs America Bank*(1996) ; *Bankers Trust Co. vs State Bank of India*(1991) ; *Bayerische Vereinsbank Aktiengesellschaft vs National Bank of Pakistan*(1997) 등.

3.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 수요곡선의 의미

언급한 바와 같이 수익자가 얼마나 많은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해야 하는가라는 선택행위의 결정은 얼마나 많은 검토기간을 소요하느냐 하는 은행의 선택행위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파라미터로 하는 변수들은 불일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의 양(x_1)과 유효기일을 제약조건으로 하는 서류취급을 위한 기간의 총량(x_2)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은행의 서류검토를 위한 합리적 선택행위는 이들 두 변수간의 일련의 선택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한다면 은행의 서류취급과 관련한 효용은 이들 두 변수들간의 다양한 묶음(bundle)들로 존재한다는 것이다.¹⁴⁾

따라서 은행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들의 서류취급 행위는 이들 두 변수간의 무수한 경우의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그 결합된 형태들은 특정의 기회집합(opportunity set)을 이루게 되는 바, 이것이 곧 개설은행에게 부여된 서류검토의 부존권역(endowment)이 된다. 이처럼 기회집합으로써의 은행의 부존적 권역이 설정되어 있다면 당해 부존적 권역내에서 연쇄적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선택대안중 최대의 효용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선택조합이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은행의 효용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효용함수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text{즉, } U(X) = U(x_1, x_2) \quad (1)$$

여기서 x_1 과 x_2 는 은행이 실제로 서류검토에 소비하는 기간의 양들으로써 이들의 소비로부터 얻는 서류검토행위의 민족 내지 효용에 대한 은행 자신의 주관적 평가 지표가 된다.¹⁵⁾

14) 이처럼 고려의 대상을 두가지 요소로 한정한다면 이들의 조합관계는 2차원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어 그 분석이 비교적 용이해지며, 이러한 전제를 통해 완비성(completeness), 이행성(transitivity), 연속성(continuity), 그리고 국지적 비포화성(local nonsatiation) 등과 같은 소위 선호체계의 공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5, p.7 ; Hal R. Varian, Microeconomic Analysis, 3rd ed., Norton, 1992, pp.98-115 ; 노응원, 신봉호, 「경제학의 구조」(Eugene Silberberg 원저), 진영사, 1993 pp.377-395 참조

15) 서류검토행위에 대한 은행의 효용극대화 모형의 구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선, “서류치유원리와 하자면제교섭권 활용이 서류검토행위의 합리성에 주는 효과분석 : 신용장거래관습해석의 법경제학적 접근,”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 23권 2호,

이때, 은행의 기간활용은 UCP500에 이르러 7일의 제약 하에 있게 되고, 서류검토 후 수익자에 대한 희망적인 서류치유기회 부여를 위해서는 유효기일을 제약 조건으로 하므로 다음과 같은 예산제약이 고려된다.

$$\text{즉, } \sum_{i=1}^n P_i X_i = X(P_1 X_1 + P_2 X_2 = M) \quad (2)$$

여기서 $P_1 P_2$ 는 $X_1 X_2$ 를 소비하는데 느끼는 부담의 정도를 의미 한다. 따라서 X_1 에 대한 소비가 $P_1 X_2$, X_2 에 대한 소비가 $P_2 X_2$ 일 때 이 기간들의 소비는 유효기일과 서류검토기간 7일의 제약 하에서 은행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최적의 조합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U(X_1 X_2)$ 라는 효용함수를 놓고 볼 때 실제적인 측면에서 은행의 불일치서류 처리기간이 1일 걸리면 수익자의 서류 제시는 적어도 유효기일 1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실질적인 가정은 비현실적인 가정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P_1 X_1 = P_2 X_2$ 라는 사실, 즉 $U(X_1 X_2) = X_1 X_2$, 다시 말해 은행의 서류검토 행위는 준선형 효용함수 (quasi-linear utility function)가 된다는 가정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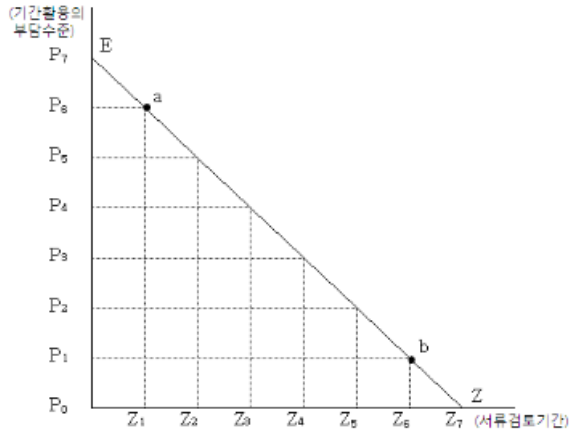
따라서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효용함수를 이같은 준선형 효용함수로 정의하면 첫째, X_1 에 대한 소비지출 $P_1 X_1$ 이 X_2 에 대한 소비지출 $P_2 X_2$ 와 항상 일치 ($P_1 X_1 = P_2 X_2$) 하므로 이로부터 도출되는 서류검토기간의 수요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되며 둘째, 이들의 소득-소비의 경로는 기하학적으로 원점과 점($X_1 X_2$)을 연결하는 반직선이 됨은 자명하다. 이에 따라 은행은 부존영역 (M)이 어떤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든 이는 닮은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 $X_1 X_2$ 소비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 (소득탄력성 =1)을 도출할 수 있다. 결국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행의 효용함수가 준선형 함수라는 사실은 이로부터 도출되는 수요곡선을 통해 소비자 잉여이론을 준용하여 후생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¹⁶⁾

1998, 2, pp.423-426 참조

16) 일반적으로 소비자 잉여를 측정하는 전통적 방법은 소비자 잉여를 도출해보는 것이다. 특히 효용함수가 준선형 효용함수일 때 소비자 잉여는 합리적 근사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는 R. Willig, "Consumer's Surplus without Apolog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1976, pp.589-597 참조

이같은 공준에 따라 도출 가능한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수요 곡선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된다.

〈그림-1〉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 수요곡선



점 a는 수익자로부터 서류가 은행에 제시된 경우 당해 서류의 하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서류검토기간이 1일 소요된다는 의미로써 합리적 서류검토 은행이라면 지체없이 하루만에 서류검토를 완료하는 점이다. 반면 점 b는 하자 판별 및 기타 당해 은행의 서류검토 정황에 의해 6일간의 서류검토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점 Z는 7일간의 온전한 서류검토기간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이며, 점 E는 하자가 없는 엄격일치에 준하는 서류가 은행에 제시되는 경우로서 그 제출시점은 유효기일 당일일 것이다.

결국 점 a와 점 b를 잇는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활용 수요곡선 EZ는 그간 UCP500이 꾀하였던 합리적 서류 검토선이 되며, 이는 곧 수익자측면에서는 희망적인 서류의 치유가 가능해지도록 유도하는 합리적 서류치유원리 적용선을 함의한다. 나아가 당해 수요곡선은 은행과 수익자 어느 누구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상대방의 효용을 증가 시킬 수 없는 균형상태, 즉 파레토 효율이 실현되고 있는 효율적 서류검토선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지난 70여 년간 신용장통일규칙이 의도하였던 서류검토를 위한 합리성(reasonableness)은 서류검토기간의 경제적 효율성(eficiency)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Ⅲ. UCP 600 제 14조 (b)항의 후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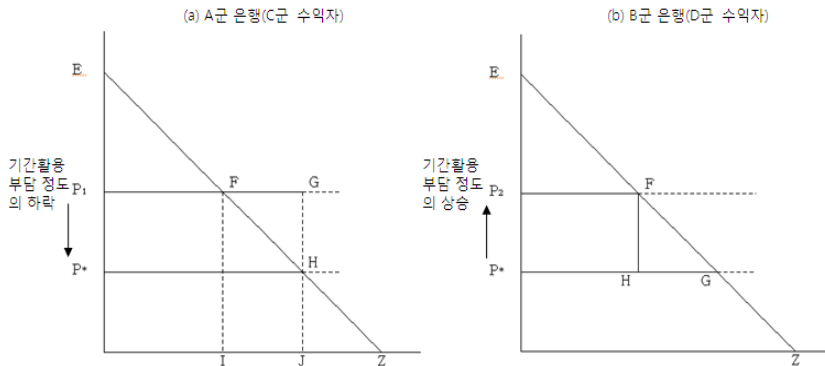
1. UCP 600 제 14조 (b)항에 의한 후생변화

UCP600 제 14조 (b)의 표면적 해석에만 일단 의존해 본다면 이 조항은 단언적으로 신용장거래에 참여하여 서류를 취급하는 은행이라면 유효기일의 도래 및 경과 여부에 관련 없이 서류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5일간의 서류검토기간을 향유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UCP600이 그간 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된 이래 고수해 왔던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 요건을 삭제한 이상 본 연구가 도출한 합리적 서류검토기간 활용곡선은 필연적으로 그 균형된 상황으로부터 이탈되어 변화된 형태를 보이게 될 것이며, 이는 서류검토은행과 더불어 수익자의 서류취급 선택행위에도 파급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UCP 600 제 14조 (b)항의 규정에 의한 이들 당사자들의 후생변화를 일단 개별적 당사자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유추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이게 된다.

〈그림-2〉 UCP600 제14조 (b)항에 따른 후생변화



그간 UCP500 하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던 서류검토은행과 근면하게 서류를 제출한 수익자의 경우 UCP600의 결과 〈그림-2〉 (a)에서 확인해 볼 수 있

듯이 기간활용의 부담의 정도가 P_1 에서 P^* 로 하락하게 됨에 따라 P_1FHP^* 만큼의 후생편익 (welfare benefit)을 누리게 된다. UCP600이 이들에게 P_1FHP^* 의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한 후생비용(welfare cost)은 P_1GHP^* 만큼으로 ΔFGH 만큼의 크기가 바로 A군의 은행과 C군의 후생증진을 위해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을 포기한 신용장거래관습의 후생손실 (welfare less)이 된다.

ΔFGH 를 후생손실이라 한다 해서 A군 은행과 C군 수익자가 UCP600의 결과 UCP500에 비해 그 후생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은행 또는 수익자는 $P_1 \rightarrow P^*$ 만큼 기간활용의 부담이 경감된 결과 UCP500에 비해 P_1FHP^* 만큼의 더 큰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ΔFGH 는 기간활용의 부담이 경감된 결과 이들 은행(수익자)으로 하여금 기간의 활용을 과잉소비하게 함을 의미한다. 즉 서류검토기간의 활용을 통한 한계편익 (marginal benefit)이 서류검토기간 하루를 더 소비할 때의 실제 부담보다 적어질 때까지 더 많이 당해 기간을 활용함으로써 엄격한 의미로서의 효율적 서류검토기간 활용으로부터 이탈되는 비효율의 크기를 함의한다 하겠다.

한편 [그림2]의 (b)에서는 그간 UCP500 하에서 서류검토기간 7일을 자신의 부존권역이라 간주하고 온전히 그 기간을 모두 활용하였던 B군의 은행은 UCP600의 결과 P_2FHP^* 크기만큼의 후생손실을 겪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UCP600 제 14조 (b)항이 서류검토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함에 따라 그 기간활용의 부담이 상승함에 따라 2일만큼의 기간소비를 감축시키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긴축소비가 신용장 거래계에 주는 효과가 P_2FGP^* 만큼의 크기가 되지 못하고 P_2FHP^* 에 머무는 까닭은 ΔFGH 만큼의 비효율 비용, 즉 후생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ΔFGH 는 B군의 은행이 UCP600 제 14조 (b)항의 개정결과 UCP500에 비해 얼마나 후생이 감소했는지를 시사해 주는 측정치가 된다.

2. 은행의 서류검토기간의 활용에 주는 후생효과

한편 문제는 개별 은행들의 효용변화만을 가지고서는 전체 신용장거래관습

에 주는 후생효과를 측정하기란 불가능하므로 UCP 600 제 14조 (b)항의 개정의 결과가 이들 집단간에 얼마만큼의 후생이익과 후생손실을 야기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들 개별 은행의 수요함수를 총체적 수요함수(aggregate demand function)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 은행의 선택행위만을 추정해 보는 것에 한발 더 나아가 이를 전체 시장으로 확대하여 수없이 많은 개별 은행과 수익자들의 효용을 비교 형량한다는 것은 이들의 효용에 대한 태도도 상이하고 효용극대화 선택점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전체 수요함수를 도출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들 수많은 은행 중 대표적 은행 집단의 수요함수를 총체화(agggregation) 시킨다면 이들 군집간의 후생변화는 근사치로써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¹⁷⁾. 은행의 총체적 수요함수는 다음의 식으로 도출된다¹⁸⁾.

기간활용의 총체적 수요는 대표적 은행 i 의 기간활용 부담가격(P)과 총체적 부존권역의 크기 (m_i)의 함수이므로 그때의 총체적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V(P, M) = \sum_{i=1}^n = a_i(P) + b(P)M \quad (\text{여기서 } M = \sum_{i=1}^n m_i) \dots\dots\dots (3)$$

이때 은행의 효용함수를 준선형 효용함수로 정의했으므로 위식은 $b(p) \equiv 1$ 의 값이 되고 a_i 의 값만 P 에 따라 변화하는 Gorman Form으로 표시된다. 즉,

$$V(P) + M = \sum_{i=1}^n = v_i(p) + \sum_{i=1}^n m_i \dots\dots\dots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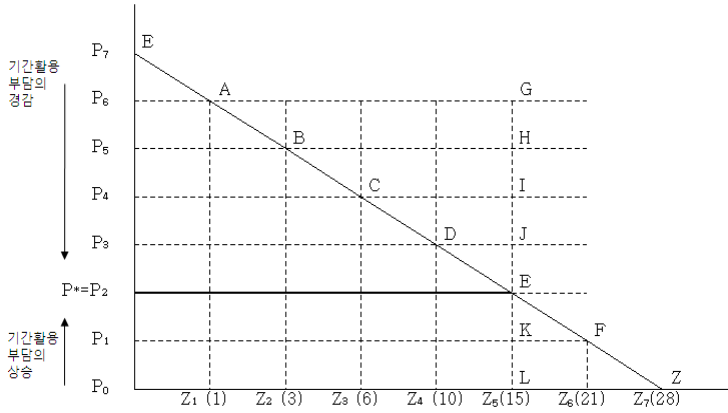
위 총체적 수요함수¹⁹⁾를 이용하면 소비자 잉여분석에 의해 이들 은행과 수익자 집단의 UCP 600의 개정에 따른 총 후생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17) Hal R. Varian, *op., cit.*, pp.152-154

18) *ibid.*

19) 이 총체적 수요함수는 시장수요함수로서 개별 당사자의 수요곡선을 수평방향으로 더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를 horizontal summation이라 한다 ; Edga K. Browning & Mark A. Zupan, *Microeconomic Theory and Application*, Harper Colins Collage Publishers, 1996, pp.115-116 ; 이 같은 방법이 정당화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모든 당사자에게 똑같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이준구, 전게서, p.122 참조

〈그림-3〉 총체적 수요곡선의 도출



〈그림-3〉에 따라 부존권역기준이 적용될 경우 UCP 600의 개정 결과 후생 편익이 예상되는 1 일로부터 5일에 이르기까지 그간 서류를 검토 완료해왔던 은행집단²⁰과, 후생감소가 예상되는 6일로부터 7일에 이르기까지 그간 서류검토를 해오던 은행집단의 총 후생효과를 비교형량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UCP500 제 14조 (b)항의 후생효과

(a)후생의 증가 (A군 은행)

서류 검토기간 \ 항목	APEA1	WB		AREA2	WL
1일소요	P_6AEP^*	32		AGE	28
2일소요	P_5BEP^*	27		BHE	18
3일소요	P_4CEP^*	21		CIE	9
4일소요	P_3DEP^*	12.5		DJE	2.5
5일소요	UCP500의 적용시점과 동일함				
TWB		92.5		TWL	57.5

20) 수익자로부터 서류가 제출된 당일 서류검토를 완료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점 P7은 소위 모서리 해(corner solution)로서 본 연구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후생의 감소 (B군 은행)

서류 검토기간	항목	APEA1	WC		AREA2	WL
6일소요		$P^* EFP_1$	18		EFK	3
7일소요		$P^* EZP_0$	43		ZLE	13
TWC			61		TWL	16

주) AREA1,2 : 후생지표 WB : 후생편익 WC : 후생비용 WL : 후생손실 TWB : 총 후생편익 TWC : 총 후생비용 TWL : 총 후생 손실

〈표-2〉를 통해 볼 때 UCP600 제 14조 (b)항의 개정 결과 A군 은행집단의 대부분, 즉 1일로부터 5일에 이르기까지 그간 UCP500 하에서 서류를 검토 완료해왔던 은행들은 후생편익을 그리고 6일로부터 7일에 이르기까지 서류를 검토해오던 B군 은행집단은 후생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후생편익을 누리는 A군 은행집단의 경우 유효기일에 임박한 수익자의 서류제출을 말미암아 그간 촉박하게 하루나 이틀만에 서류를 검토 완료해야 했던 은행들은 가장 큰 후생편익을 누리며, 반대로 UCP500 하의 서류검토기간 7일을 자신의 부존권역으로 해석하여 온전한 활용을 하였던 B군 은행은 가장 높은 후생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문제는 UCP600은 A군 은행집단에 〈92.5〉에 달하는 후생편익을 제공하지만 〈57.5〉 크기만큼 신용장거래관습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A군 은행집단의 경우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부담이 경감된 결과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한계 편익(marginal benefit)이 서류검토기간 한 단위, 즉 하루를 더 소비할 때의 실제 부담수준에 다다를 때까지 자신에게 부여된 서류검토기간 5일을 모두 과잉소비 하려는 경향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류검토기간 선택행위의 효율성을 함의하였던 UCP500의 서류검토기간 활용여지를 UCP600에 이르러 5일로 못박아 놓았기 때문에 마치 재화가격의 강제 조작에 의해 재화가격이 재화의 진정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결과와 동일한 형태로 서류검토기간 활용 수준에 괴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UCP500의 적용하에서 하루나 이틀만에 서류검토를 완료해야 했던 은행들에게 후생편익이 집중되지만 전체적인 신용장거래관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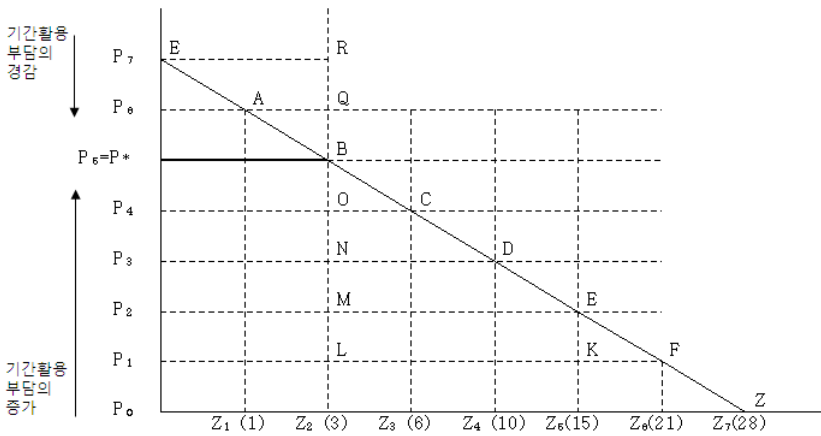
체계 내에서는 후생손실의 크기만큼 비효율이 크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연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61>만큼의 후생비용의 부담을 떠안고 UCP600 하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서류검토를 해야만 하는 은행집단에게는 근면성과 신속성의 도모로 <TWC-TWL=45>의 크기만큼 신용장거래관습에 높은 양(+의) 후생효과를 주게 되며, 이들의 실제 후생감소는 TWL, 즉 <16>만큼의 크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수익자의 서류치유원리 적용에 주는 후생효과

이하에서는 부존권역기준이 적용될 경우 UCP 600 제 14조(b)항의 개정결과 후생감소가 예상되는 1일로부터 5일까지의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해왔던 수익자 집단의 경우와 후생편익이 예상되는 6일 이상의 서류치유기간을 확보해오던 수익자 집단의 총 후생효과를 비교형량한다.

<그림-4> 수익자의 서류치유원리 적용곡선 총체적 수요곡선



<그림-4>의 서류치유원리 적용곡선상의 P1은 유효기일을 중심으로 7일간의 서류검토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시했으나 실제로 은행이 1일만에 서류검토를 완료해주어 6일간의 서류치유기간을 부여받은 수익자의 기간활용부담가격을 의미하며, 같은 의미로 P2, P3, P4 역시 각각 5일,

4일, 3일간의 서류치유기간이 확보된 상태의 기간활용부담가격을 의미한다. 반면에 P7은 은행의 서류검토가 7일 모두 소요되어 유효기일의 도래와 함께 더 이상의 서류치유기회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P6는 은행의 6일간의 서류검토로 말미암아 단지 1일만큼의 서류치유기간을 갖지 못하게 된 수익자의 기간활용부담가격을 의미한다.

〈그림-4〉의 서류치유원리 적용곡선의 도출에 따라 UCP600 제 14조(b)항의 개정결과 후생손실이 예상되는 수익자 집단(D군)과 후생의 증가가 예상되는 수익자 집단(C군)의 후생효과를 비교형량하면 〈표-3〉과 같다.

〈표-3〉 UCP600 제14조 (b)항의 후생효과 - 수익자 집단

(a) 후생의 감소 (D군 수익자)

서류 검토기간 \ 항목	AREA1	WC	AREA2	WL
1일소요(P ₁ →P*)	P*BLP ₁	12	BLF	36
2일소요(P ₂ →P*)	P*BMP ₂	9	BME	18
3일소요(P ₃ →P*)	P*BNP ₃	6	BND	7
4일소요(P ₄ →P*)	P*BOP ₄	3	BOC	1.5
5일소요(P ₅ →P*)	변동없음	-	변동없음	-
TWC		30	TWL	62.5

(b) 후생의 증가 (C군 수익자)

서류 검토기간 \ 항목	AREA1	WB	AREA2	WL
6일소요(P ₆ →P*)	P ₆ ABP*	2	AQB	1
7일소요(P ₇ →P*)	P ₇ BP*	3	P ₇ RB	3
TWC		5	TWL	4

분석결과 UCP500의 적용하에서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7일의 완전한 활용으로 서류치유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수익자 집단은 UCP600의 2일간의 서류검

토기간 단축으로 후생편익을 누리게 되지만 그 후생증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그간 은행의 신속한 서류검토행위에 의해 유효기일을 중심으로 충분한 서류치유기회를 부여받았던 수익자 집단은 UCP600의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큰 후생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는 이미 (표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은행집단에게 서류검토토기간 5일을 과잉소비하게 유인이 작용함으로써 당해 기간 5일이 완전하게 활용됨으로 말미암아 신용장거래관습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비효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수익자 측면의 경우 UCP500하에서 통상 유효기일 당일이나 이에 임박한 일자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는 수익자 집단이 7일 이상 서류치유기간을 상정하고 은행에 서류를 제시한 수익자 집단보다는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UCP600 14조 (b)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편익이 집중되는 후자의 현명하고 근면한 수익자 집단보다는 오히려 전자의 수익자 집단이 더 큰 후생의 감소폭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규정 변화에 따라 전자의 수익자 집단의 기간에 대한 대체 탄력성이 후자 수익자 집단의 대체 탄력성 보다 훨씬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수익자 집단의 효용감소폭이 후자 수익자 집단보다 훨씬 큼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 결과가 확증하고 있는 주된 사실은 서류검토토기간의 결정과 관련해 소위 부존적 권역 기준이 적용되면 UCP 600 14조 (b)항은 그 개정의도에 따라 그간 촉박한 서류검토토를 촉구받았던 은행집단, 또는 신속한 서류검토토업무를 스스로 도모해왔던 은행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후생편익을 누리게 해준과 아울러 그간 은행의 지나친 7일간의 완전한 활용으로 서류치유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수익자 집단에게도 후생의 증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그간 7일간의 완전한 서류검토토기간활용을 해왔던 은행집단에게는 신속성을 요구함으로써,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서류치유기간을 상정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촉박한 서류검토토를 종용해왔던 수익자 집단에게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면성을 요구함으로써 신용장거래관습 전체의 후생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UCP600 제 14조 (b)항에 합리적기간이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최대기간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이 기간을 소위 「고정기간(fixed period)」라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5일이라는 기간이 오로지 고정된 최대값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의 “탄력성”이 미치는 5일이라는 개념을 함의하고 있다는 서류검토기간의 내재적 합리성 견해는 오히려 은행 전반에게 지나치게 후생비용을 전담케 할 우려가 크고, 수익자가 상대적으로 후생증진을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내재적 합리성 견해는 2일이나 단축된 기간속에서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은행에게 충분한 서류치유기간조차 확보하지 않고 신속한 서류검토를 종용해왔던 수익자 집단에게 어떠한 개선노력도 촉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신립가능한 견해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간 신용장통일규칙이 피해왔던 서류검토기간의 합리성 요건은 은행과 수익자간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더 이상 파레토 효율에 다다르지 못한 채 분쟁만을 야기해왔다는 경험률에서 볼 때 금번 UCP 600 제 14조 (b)항의 개정은 은행에게 5일간의 서류검토기간을 부존적 권역으로 부여함으로써 그간 UCP 500이 피했던 효율적 서류검토기간 활용의 추상적 기대를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행위 기간으로 대체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UCP600은 제 14조 (b)항의 개정을 통해 확정적인 서류검토기간을 확보하여 은행과 수익자간의 서류검토기간 관련 의 마찰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조정된 형태의 신용장거래관습을 지향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미시적으로는 비효율과 후생손실이 발생하긴 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이들 비용이 분쟁의 방지비용으로 편입됨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분쟁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UCP600 제 14조 (b)항의 후생효과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 중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신용장거래관습을 지배해 왔던 서류취급행위의 합리성 기준이 금번 개정으로 말미암아 소위 경제적 효율성 기준으로부터 분쟁의 방지효과를 일층 강화한 확정적 안정성 목적의 강제적 균형(compulsory equilibrium) 기준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 변화된 기준을 뒷받침하는 행위 공준은 A군 은행집단과 C군 수익자 집단에게는 확정적 안정성을 통한 전문성(expertism)으로 B군 은행집단과 D군 수익자 집단에게는 강제적 신속성을 통한 근면성(diligence)으로 각각 특화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한편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5일을 부존권역화 할 경우 지나치다고 판단될 만큼 후생편익이 집중되는 은행 집단과 상대적으로 높은 후생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집단을 고려해 볼 때, 나아가 은행의 서류검토기간 5일의 부존권역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중손실, 즉 비효율 증대를 가능한 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유효해지기 위해서는 후생편익이 집중되어 높은 후생증진효과를 누리는 은행집단들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속한 서류검토를 통해 수익자로 하여금 성공적이고 희망적인 서류치유가 가능하도록 「배려」의 차원에서 서류를 검토할 필요성이 요청됨을 본 연구 결과는 부가 시사하고 있다.

특히 완벽한 형태의 근면성을 견지한 수익자 집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UCP500에 비해 UCP600하에서 높은 후생비용을 부담함으로써 후생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익자들, 다시 말해 유효기일에 상당한 서류치유기간 (예컨대 유효기일 2~4일 전)을 상정하고 서류를 제출한 수익자에 대해서는 이미 UCP600하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부존권역 5일을 누리는 은행들 입장에서 자신의 서류검토 정황에 따라 이들 수익자들에게 소위 “내재적 합리성 기준”에 따라 신속한 서류검토를 해 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내재적 합리성 기준” 행위는 UCP600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의무」의 차원에서 당해 은행집단에게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하나 희망적인 신용장거래의 종결을 위해 일종의 배려행위로서 은행이 그 같은 공동협조노력을 수익자와 공유하게 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공정한 신용장 거래관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동시에 UCP600 제 14조 (b)항의 개정에 따른 후생효과가 비로소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류검토기간과 관련하여 비효율이 제거된 신용장거래관습의 최적편성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신용장거래관습을 지향하고자 하는 은행과 수익자간의 합목적적 공동협조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임을 UCP600 제 14조 (b)항은 다시 한번 재확인 시켜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국제상업회의소의 UCP 600 완성초안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의 검토”,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_____. 김동윤,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례검토”,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pp. 3~28.
- 김기선, “서류치유원리적용과 하자면제교섭권활용이 서류검토행위의 합리성에 주는 효과분석 : 신용장거래관습해석의 법경제학적 접근”,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1998.
- _____, “신용장 거래관습에 있어 서류치유원리와 금반언법리의 적용방식”, 「무역상무연구」, 제1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0. 2, pp. 515~536.
- 김종철, “UCP 600의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pp. 21~44.
- 박석재,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_____, “UCP 600에서의 통지은행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8.
- 박세운, “UCP600에서의 복합운송서류 수리요건과 실무상 유의점”, 「국제상학」, 제24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9. 12.
- _____. 김영락 · 방두완, “서류심사에 대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 서백현,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항구간 운송 선하증권조항의 해석”,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2006.
- 서정두, “ISBP의 특징과 문제점 및 UCP 600의 주요과제”, 「무역상무연구」, 제22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 2.
- _____, “UCP 600 서류심사기준의 문제점과 실무상 유의점”, 「무역상무연구」, 제3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7. 2.
- _____, “UCP600 이후 선하증권 하자관련 분쟁사례”, 「무역상무연구」, 제4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0. 2.
- 오원석, 서경, “UCP 600의 서류심사기준의 기본원칙과 운송서류관련조항의 변경내용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3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9. 8. pp.117-142
- 이용근 · 최유섭, “UCP600상의 서류심사관행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 이제현, 김연숙, “UCP 600 운송서류조항의 개정내용과 해석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2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7. 6.
- 최석범, “UCP 600에서 서류관련규정상의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2006 동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6. 12.
- 한재필, “UCP 600을 위한 주요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6. 6.
- _____, “ISP98하의 보증신용장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UCP 600과의 비교적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4권 제3호, 한국국제상학회, 2010. 9.
- Annual Survey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IBLP,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Black' Law Dictionary, 6th ed., St. Paul, Minn., West Pub. Co., 1990
- Browning, Edgar K. & Zupan, Mark A., Microeconomic Theory and Application, 5th ed.,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6
- Byrne, James E., The Comparison of UCP 600 & UCP 500, IIBLP, 2007
- _____, "Revised UCC Section 5-108(e) : A Constitutional Nudge to Courts", UCCLJ, Spring, 1997.
- Chirelstein, A. Marvin, Concepts and Case Analysis in the Law of Contract, The Foundation Press, Inc., 1990
- Documentary Credit Insight. 각 호
- Dolan, J. F., "Another view of notice without delay, disposal, and preclusion", DCI, Vol.11, No.2. ICC Publishing S.A. 2005
- George, N. D., "Delete Reasonable time and without notice from the UCP", DCI, Vol.11, No.3. ICC Publishing S.A. 2005
- Gustavus, Joseph D., "Letter of Credit Compliance under Revised UCC Article 5 & UCP 500", UCCLJ, 1997
- Harfield, Henry, "An Agnostic View", Brooklyn Law Review, Vol.56, No.1, 1990.
- ICC, More Case Studies on Documentary Credits, ICC Pub. S. A., 1991.

- ICC, Opinions(1989-1991) of the Banking Commission, ICC Pub.S.A., 1991.
- ICC, Opinions(1995-1996) of the Banking Commission, ICC Pub.S.A., 1996.
- ICC, Opinions(1998-1999) of the Banking Commission, ICC Pub.S.A., 1999.
- ICC, More Queries and Responses on UCP 500, ICC Pub.S.A., 1997.
- ICC, International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Pub. No. 645, 2002
- Kozolchyk, Boris, "Strict Compliance and the Reasonable Document Checker", Brooklyn Law Review, Vol. 56, 1990
- Kuperberg, Mark & Beitz, Charles, Law, Economics and Philosophy, Rowman & Allenheld, New Jersey, 1983
- McLaughlin, Gerald T., "On the Periphery of Letter of Credit Law : Softening the Rigors of Stict Compliance", Banking Law Journal, Vol. 106, 1989
- Silberberg, Eugene, The Structure of Economics : A Mathematical Analysis, McGrow-Hill, 1990
- Taneja, P., "UCP 600: A document restoring the credibility od L/Cs", DCI, Vol.12, No.4. ICC Publishing S.A. 2006
- Varian, Hal R., Microeconomic Analysis, 3rd ed., Norton & Co., 1992,
- Ver Loren van T. P.,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Martinus Nijhoff, Hague, 1981.
- Willig, R., "Consumer's Surplus without Apolog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6, 1976

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 for the Optimal Reorganization in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based on the Reappraisal of the UCP Article 14(b)

Kim, Ki Sun

UCP 600 Article 14(b), providing rules for the period of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is a radical reorganization of UCP Article 13(b). The provision changes the period of time to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instead of reasonable time. One of the critical problems giving rise to the difficulty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s the question of fact that there may be two possible conflicting options in determining the time of checking documents presented. The one doctrine is fixed time(safe harbor) standard, and the other is hidden reasonableness standard. This study analyzes which option should be adopted for the optimal application standard by welfare effect methodology using consumer surplus approach and suggests that safe harbor standard should be optimal solution to the determination of period of examination of documents presented in letter of credit regime.

Key Words : UCP Article 14(b), Reasonable Time, Welfare Effect